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84
----------	-----

제출년월일 : 1999.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정이유

- 대학관련 조례·규칙을 통합
- 단일 조례로 제정하여 대학운영에 효율화를 기함

☐ 주요골자

- 대학의 운영을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이념과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정함(안 제2조)
- 대학의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기능 등을 정함(안 제3조~제11조)
- 대학운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9조)
- 장학기금의 설치 및 기금조성, 기금운용, 기금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제26조)
- 대학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추천 및 임용계획수립시 반영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 대학운영의 감독과 학과설치 및 폐지, 학생정원의 증감등 도지사 승인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제133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대학은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한 대학의 이념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 2 장 대학운영위원회

제3조(설치) 제2조의 이념달성과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경제적,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는자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의 운영상 도지사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 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학장의 요청,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학담당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담당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충청북도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대학운영특별회계

제12조(설치운영) ①대학운영의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대학운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회계는 학장이 관리·운영한다.

③회계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관리,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행한다.

제1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험료
2. 입학금 및 수업료
3. 수수료 및 사용료
4.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6.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잡수입

제14조(세출) ①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대학의 운영·관리비
2. 대학의 사업비
3. 장학기금의 출연
4. 지방채 또는 일시차입금 상환에 필요한 경비
5. 예비비 등 기타

제15조(수험료) ①대학에 입학하고자 입학시험에 응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험료의 납부는 “대학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된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수험료는 학장이 결정한다.

제16조(입학금 등 결정) 입학금, 수업료의 책정은 학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7조(수업료 등 면제) ①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
2. 천재지변 및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수업료 등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수수료) ①학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징수는 “대학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②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9조(준용규정)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4 장 장학기금

제20조(기금설치)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금구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내외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

제22조(기금의 용도)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만 사용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대학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②기금관리운용을 위하여 “장학기금”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 운용한다.

③제2항의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학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학생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학생업무담당으로 한다.

④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학장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24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범위, 대상자선정,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장학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제27조(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①학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특별임용 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에 대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천을 받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당해기관의 결원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계획 수립시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감 독

제28조(감독 및 승인)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도지사의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폐지
2. 학생 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7 장 보 칙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와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

< 별 표 >

각 종 증 명 별 수 수 료

종 류	수 수 료	비 고
1. 입학증명 2. 합격증명 3. 재학증명 4. 휴학증명 5. 복학증명 6. 재직증명 7. 제직증명 8. 수료(예정)증명 9. 졸업(예정)증명 10. 성적증명 11.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 12. 교육비 납부증명	○국문증명 1통당 : 200원 ○영문증명 1통당 : 300원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27조(신규임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 시험에 의할 수 있다.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를 임용하는 경우

○ 교육기본법 제2조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현실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47조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념을 고취·연구하고 지능을 단련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